

문서번호	감사담당관-103389
결재일자	2015.9.2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180호

주 무 관	조사인권팀장	감 사 담 당 관	부 구 청 장
김필규	유희남	구승희	전결 09/22 정연찬
협 조			

2015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실태 감사계획

☐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15. 10. 5. ~ 10.12.(5일간)
- 감사대상 : 세입세출외현금(총괄부서 : 재무과, 보건소)
- 감사범위 : 2010. 7월 ~ 2015. 6월(5년간)
- 감사내용 :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

☐ 감사방향

-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근거 및 목적의 적정여부
-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처리, 정산, 및 사후관리 적정여부 등

☐ 결과조치

- 위법부당한 사례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조치
- 감사 지적사항,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및 개선대책 강구

감사담당관

2015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실태 감사계획

세입세출외현금 집행의 적정성 등 관리실태를 감사하여 자금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함.

I 감사 개요

■ 감사근거

- 동작구 행정감사 규칙 제3조(적용범위) 및 제4조(감사의 종류)
-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96조(출납사무의 감사) 및 96조(검임출납사무의 감사겸행)

■ 감사구분 : 재무감사

■ 감사기간 : 2015. 10. 5. ~ 10. 12.(5일간)

※ 예비감사 : 2015. 9. 30. ~ 10. 2.(3일간)

■ 감사대상 : 세입세출외현금 (총괄부서-재무과, 보건소)

구 분	종 류
보 증 금	○ 하자보수보증금, 기타보증금, 가로수이식하자보수보증금
보 관 금	○ 소득세, 지방소득세, 4대사회보험, 씨름단퇴직금, 급여압류금, 기타 압류금, 공매의뢰미수령금, 공사이행·의료급여관리사 등 퇴직급여충당금, 기여금, 대여학자금, 학교용지부담금 등
잡종금 기타	○ 동작구추모의집사용료

■ 감사범위 : 2010. 7월 ~ 2015. 6월(5년간)

■ 감 사 반 : 조사인권팀장 외 4명

■ 감사방법 : 관련서류 및 지방재정시스템 대조 확인

■ 감사내용 :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

II

중점 감사방향

☐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근거 및 목적의 적정여부

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

(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)

1. 공공시설 손실부담
2. 계약보증·입찰보증·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
3.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
4.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

☐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처리의 적정여부

- 반환청구서에 의한 반환절차 이행여부
- 정당한 채주(납부자)에게 지급여부
-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기관 경과분 적정한 반환이행 및 세입처리 여부

☐ 세입세출외현금 정산 및 사후관리 적정여부

- 세입세출외현금납부와 내역부 정리, 관리의 적정여부
- 세입세출외현금 e-호조 내역과 은행잔고 일치 여부
- 지출서류 및 영수증 보관상태

☐ 지방재정시스템(e-호조)를 활용한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의무화 준수여부

동작구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 2

(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처리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.
 4.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
-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.
 1.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: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

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실무담당자 분리하여 확인체계 강화여부

동작구재무회계규칙 제3조

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

- ①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
더.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- 출납주무자
- ⑤ 재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업무에 있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Ⅲ

세부 추진계획

■ 감사반 편성(조사인권팀 외 5명)

직 급	성 명	담당부서
행정 6 급	유 희 남	감 사 총 관
행정 7 급	김 필 규	행정 관리국, 보건소
행정 7 급	김 일 환	기 획 재 정 국
행정 7 급	이 수 지	주민생활복지국, 도시관리국
행정 8 급	손 우 현	안 전 건 설 교 통 국

■ 감사준비

- 예비감사 및 자료수집
 - 기 간 : 2015. 9.30 ~ 10. 2.(3일간)
 - 내 용 : 본 감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수집
- 감사자 교육
 - 일 시 : 2015.10. 2.(금) 17:00
 - 장 소 : 공직자윤리위원회실
 - 교 육 자 : 감사담당관
 - 내 용 : 중점 감사사항, 감사예절 등 감사 수칙에 관한 사항

■ 감사절차 준수

- 재심의 절차 준수
 - 근 거 :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감사 규칙 제26조
 - 절 차 : 감사결과 통보 시 재심의 신청절차 안내
- 적극행정 면책규정 준수
 -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감사 규칙 제28조 ~ 제40조
 - 절 차
 - 감사 종료시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청절차 안내
 - 처분양정 결정 전 감사결과 조치 예정사항 통보서 통보

■ 감사체계 및 보고

- 체 계 : 일일보고 토의 및 검토 익일 감사방향 제시
- 보 고 : 감사활동 일일보고

■ 감사결과 조치

-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조치
- 감사 지적사항,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및 개선대책 강구
-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적극 개선토록 조치

■ 구민참여감사관 감사 보조참여

- 기 간 : 2015. 10. 5. ~ 10. 12. (5일간)
 - 대 상 : 구민참여감사관 중 참여희망자
 - 방 법 : 제도개선 사항 건의 및 감사 직접 참관 등
- ※추진근거 : 2015년도 구민참여감사관 운영계획(구방침 제106호)

IV

행정사항

■ 수감자료 제출

- 대상기간 : 2010. 7월 ~ 2015. 6월 (5년간)
- 제출자료
 - 세입세출외현금 통장
 -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반환 등 회계서류 일체
 - 그 외 자료 및 서류는 감사기간 중 감사 담당자가 별도 요구
- 제출기한 : 2015. 9.25.(금) 18:00까지

■ 수검준비 협조 : 홍보전산과, 재무과

- 수검대상 부서 전자결재시스템, e-호조시스템 감사용 사용권한 부여
- 공직자윤리위원회실 내 인터넷 사용환경 구축 협조

- 붙임 1. 재심의신청서 1부.
2. 적극적인 면책심사 신청안내문 1부.
3. 수범사례 작성양식 1부.
4. 제도개선 과제 작성양식 1부.
5. 감사활동 일일보고서 1부. 끝.

[별첨1]

[제9호서식]

재 심 의 신 청 서

1. 신청인	주 소 (기관의 소재지)			
	기 관 명 (현 소속기관명)		직 위	
	성 명		전 화 번 호	
2. 소관 부서				
3.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				
4.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				
5.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				
<p>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감사규칙 제26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※ 첨부서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심의 신청위원회 위원장 귀하</p>				

[별첨2]

[별지 제10호서식]

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안내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 감사 규칙」 제39조에 따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1. 신청권자

-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
 - ※ 감사를 받은 기관(부서)의 장 의견 첨부
- 감사를 받은 기관(부서)의 장

2. 신청기간 : 감사결과 처분이전

(단, 조치예정사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)

3. 적극행정 면책요건

- 공익성 :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
- 타당성 : 법령상의 의무이행,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,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·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
- 투명성 : 의사결정의 목적·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

※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

- 금품을 수수한 경우
- 고의·중과실,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
-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
- 위법·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
-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위법·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

[별첨3]

업무(제도) 개선사항

제 목 :

현 행

-
-
-

문 제 점

-
-
-

개선방안

-
-
-

기대효과

-
-
-

관련부서(기관)

(별첨4)

수 범 사 례

제 목 :

추진배경

○

○

○

주요 추진내용

추진효과

[별첨5]

감사 활동 일일 보고

(2015. 00. 00.)

감사분야 :

감사기관 :

감사자 : 직 성명 (인)

감사내용

감사반장	감사담당관

구 분	내 용	비 고
금 일 감 사 한 사 항 또 는 지 시 받 은 사 항		
주 요 지 적 사 항		
익 일 감 사 계 획		